

녹 의: 제16 - 207호

2016년 10월 07일

수 신: 병(의)원장

참 조: 진단검사의학과장, 핵의학과장, 보험심사과장, 검사실장, 외주수탁 담당

제 목: 유전자검사 의뢰 시 유전자검사동의서 첨부 안내

1.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원에서 시행 또는 위탁하는 유전자검사항목의 유전자검사동의서 첨부에 대하여 아래와
같이 재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3. 이에 대한 귀원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아래 -



1. 유전자검사 의뢰 시 유전자검사동의서 첨부 안내

1)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유전자
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자(또는 법정 대리인)로부터
소정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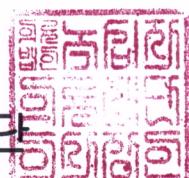
※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동의서(질병관리본부)에 대한 안내사항

<관련 법령>

-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기관
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때에는
검사대상자(또는 법정대리인)로부터 소정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(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제1항 및 제3항)
- 이를 위반한 유전자검사기관은 **업무정지 1개월**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함. (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제11호 참조)

2) 질병관리본부 안내사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의뢰 시 **유전자검사동의서가 첨부되지
않은 검사에 대해서는 처벌의 대상**이 되므로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.

3) 본원에서 시행 또는 위탁하는 유전자검사항목 중 **유전자검사동의서를 필요로 하는
항목** 의뢰 시 검사대상자의 **서면동의서를 반드시 첨부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